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64
----------	-------

발의연월일 : 2022. 12. 30.  
발의자 : 홍문표 · 박덕흠 · 윤재갑  
이용 · 정동만 · 윤한홍  
조명희 · 권성동 · 정우택  
엄태영 · 박형수 · 하영제  
최영희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산림청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유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중앙의 산림청에는 국유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중앙에 위원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앙의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에 ‘국유림위원회’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 ·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유림과 교환이 가능하지만 대부지 실태조사 등에서 대부취소 사유 등이 지적되는 경우 지적사항을 시정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 시정조치후에 일정기간 동안 대부지를 목적대로 잘 관리하는 경우 사유림과 교

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전국유림에  
서 사용허가를 받아 양봉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유  
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연체금을 연 이율 6%이하, 원금대비 최대 30%  
이하로 낮춰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를 두고, 지방산림청에 지방국유림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나. 국유림을 교환하려는 경우 대부등의 취소사유가 시정이 확인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다. 양봉산업에서 양봉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보전국유림 사용허가범  
위에 추가함(안 제21조).
- 라. 국유림 대부료등 연체료를 연이율 상한 6%이내, 최고 30%이하로 정  
수하도록 개선함(안 제23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유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유림 경영 ·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림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 · 평가”를 “국유림의 주요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2. 국유림의 경영 ·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국유림의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유림위원회는 산림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지방산림청에는 지방국유림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각 호의

경우에서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제22조제1항 · 제2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의 시정을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산지의 형질변경이 없고 산림훼손이 없으며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봉산업을 위해 양봉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23조제7항 중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료를 징수하거나”로, “있다”를 “있다(이 경우 연체료는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 체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이 법 시행후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 산림청별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li> <li>2.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li>3. 시범림의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3의2.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p>	<p>제7조(국유림위원회) ① 국유림 경영 ·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림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유림의 주요 정책----- ----- -----</li> <li>2. 국유림의 경영 ·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의 국유림의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lt;삭 제&gt;</li> </ol> <p>&lt;삭 제&gt;</p> <p>② 국유림위원회는 산림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지방 산림청에는 지방국유림위원회</p>

는 위임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1. ~ 2의2. (생략)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 필요한 --.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 -----  
-----  
-----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  
-----  
-----  
-----.  
-----  
-----  
-----  
-----.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각 호의 경우에서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제2  
2조제1항 · 제24조제1항에

	<u>해당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의 시정을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u>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 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 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 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 ----- ----- ----- -----. -----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3. 산지의 형질변경이 없고 산림 훼손이 없으며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 한 양봉농가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양봉산업을 위해 양봉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대부료 등) ① ~ ⑥ (생 략)  ⑦ 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기본 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 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 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⑧ · ⑨ (생 략)	제23조(대부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납부</u> <u>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u> <u>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u> <u>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u> <u>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u> <u>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료</u> <u>를 징수하거나 ----- 있다</u> <u>(이 경우 연체료는 대부료등의</u> <u>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u> <u>다).</u>  ⑧ · ⑨ (현행과 같음)
---	--